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16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6150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원고들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8. 6. 14.
판 결 선 고	2018. 7. 5.

주 문

1. 피고가 2017. 7.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가. [redacted]시 C에 있는 D건물 1동 6층 E호에 관한 2017년도 각 재산세(건축물) 2,798,970원 중 각 263,67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각 지방교육세 540,860원 중 각 33,8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나. 위 같은 건물 1동 6층 F호에 관한 2017년도 각 재산세(건축물) 3,175,730원 중 각 299,1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각 지방교육세 613,660원 중 각 38,3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16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redacted]시 C(도로명 주소 : [redacted]시 G) D건물 제6층 E호(전유부분 면적 191.88㎡), H호(전유부분 면적 201.06㎡) 건물(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다.

나. 집합건축물관리대장상 이 사건 각 상가의 실제 현황은 별지1 [표] 건축물현황 기재와 같고, 그 중 1동 6층 E호(이하 '쟁점1영업장'라 한다)와 F호(이하 '쟁점2영업장'이라 한다)는 각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5. 31.과 2017. 6. 23.에 실시한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쟁점1, 2 영업장이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유흥주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영업장 면적이 합계 515.37㎡(= 쟁점1영업장 236.1975㎡ + 쟁점2영업장 279.1725㎡)이고 객실수가 합계 7개로 각 중과세 기준요건인 면적 100㎡ 초과, 객실수 5개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7. 7. 5. 이 사건 각 영업장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0조,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15,292,400원의 부과처분(이하 재산세 및 지방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16

육세의 부과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 내역(단위 : 원)

납세자	구분	부과고지일	재산세 (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합계
원고 A	E호	2017. 7. 5.	2,798,970	242,190	540,860	3,582,020
	F호	2017. 7. 5.	3,175,730	274,790	613,660	4,064,180
	합계		5,974,700	516,980	1,154,520	7,646,200
원고 A	E호	2017. 7. 5.	2,798,970	242,190	540,860	3,582,020
	F호	2017. 7. 5.	3,175,730	274,790	613,660	4,064,180
	합계		5,974,700	516,980	1,154,520	7,646,200
총계			11,949,400	1,033,960	2,309,040	15,292,400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1. 30.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쟁점1, 2 각 영업장은 건물 구조상 벽으로 구분되어 공용복도를 통하여 출입하게 되어 있고, 각 영업장마다 주방, 대기실, 카운터, 신용카드 결재단말기 등을 따로 설치하여 영업하고 있으며, 쟁점1영업장은 원고 A의 처 I가 상호를 'J'로 하여 객실 3개로, 쟁점2영업장은 임차인 K가 상호를 'L'로 하고 객실 4개로 운영하는 별도의 유흥주점으로, 그 현황과 실체 및 영업자가 서로 다른 별개의 영업장임에도 쟁점1, 2 각 영업장을 하나의 동일한 영업장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16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은 형제지간으로 2010. 8. 27.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들은 2012. 3. 12. 임차인 M에게 쟁점1영업장을, 임차인 N에게 쟁점2영업장을 각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 임대차계약기간 2012. 4. 5.부터 2014. 4.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3) M은 쟁점1영업장에 대하여 상호는 'J', 영업장 면적 129.97㎡, N는 쟁점2영업장에 대하여 상호는 'L', 영업장 면적 129.97㎡로 하여 각 2012. 7. 9. [redacted]시장으로부터 식품접객업(유흥주점영업)에 관한 허가를 받고 각 M, N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4) 피고는 쟁점1, 2영업장이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춘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3. 9. 16. 원고 A에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의 중과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2013년도 재산세(토지분)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 A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그 결과 '쟁점1, 2영업장에 대하여 각 별도의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고, 임대차계약도 별도로 체결되었으며, 처분청의 조사 내용상으로도 쟁점2영업장의 카운터와 쟁점1영업장의 신용카드 계산대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영업장들의 명의자들과 임차인 사이에 동업관계가 있다거나 배후에 실질적인 수익의 귀속자가 단독으로 있는지 여부와 쟁점1, 2영업장이 개별적으로도 유흥주점 영업장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가 인용되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 처분이 경정되었다.

5) A의 배우자인 I는 2015. 4. 7. 쟁점1영업장에 대하여 상호는 'J'로 하여 음식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16

업(유흥주점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016. 1.부터 2016. 6.30.까지 쟁점1영업장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된 금액은 없고, 2016. 6. 1.부터 2016. 12. 31.까지는 94,863,637원, 2017. 1. 1.부터 2017. 6. 30.까지는 35,389,091원이다.

6) 원고 A은 2016. 3. 20. K(실질적으로는 남편인 M이 이를 운영하였다)에게 쟁점2영업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으로 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은 2016. 3. 26.부터 2017. 3. 25.까지 1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해 주었고, 그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8호증)의 목적물란 중 '임대할 부분'란에는 면적이 '128.92㎡(39평)'으로 기재되어 있다.

7) K는 2016. 4. 18.에 쟁점2영업장에 대하여 상호는 'L'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쟁점2영업장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된 금액은 2016. 4. 1.부터 2016. 6. 30.까지는 107,683,637원, 2016. 7. 1.부터 2016. 12. 31.까지는 363,973,637원, 2017. 1. 1.부터 2017. 6. 30.까지는 200,343,637원이다.

8) 그 후 피고는 2017. 5. 31.과 2017. 6. 23.에 쟁점1, 2 각 영업장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7년 유흥주점실태조사표(을 제1호증)을 각 작성하였다.

[2017년 유흥주점실태조사표]

	상호	허가일	영업시작일	허가면적(㎡)	영업자
허가사항	L	2012-7-9	2016-6-23	129.97	K
	J	2012-7-9	2015-4-2	129.97	I
조사현황	■ 2017. 5. 23.자 - 상호 동일하게 'L'로 사용(J라는 간판은 없었음) - 건축도면상 E, F호의 입구와 공간은 각각 구획된 벽으로 있으나 사실상 무벽으로, 출입구가 하나고 사용하는 공간도 구획되어 있지 않았음. - 허가명의만 2명일 뿐 카운터가 L 하나만 있었으며, 출장 당시 남자 종업원 3명도 같이 종사하고 있었음 - 2개의 허가 상호에 대기실(E호), 주방1(F호)로 운영됨. - 객실 총 7개로 E호 3개, F호 4개였음 - L와 J가 동일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재확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16

	■ 2017. 6. 23.자 -객실수 L 3개, J4개임 - 두 개의 영업허가를 득하였으나, 카운터는 하나만 존재함. - 카운터 기준 좌우의 각각 입구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영업장을 구분하는 안내판은 없었음. - L, J를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 중과세 적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의하여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기 위하여는 ①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②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여야 하고, ③ 유흥접객원을 두어야 하며, ④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개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이 재산세 등이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 유흥주점영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고(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10303 판결 참조),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과세요건사실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안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증인 M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쟁점1, 2 각 영업장이 위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16

한 6층 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하여 외부에서 보았을 때 쟁점1, 2 각 영업장으로 통하는 공통의 입구가 존재하고, 'J'라는 상호는 없으며, 'L'라는 상호와 공용카운터가 있는 사실, 2017년도에는 각 영업장에 위치한 방실의 명칭이 '부가티, 벤츠, 아우디, BMW, 페라리' 등으로 차량의 종류로 되어 있었던 사실, 위 각 영업장의 인테리어가 유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쟁점1, 2영업장이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영상 및 증인 M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1, 2각 영업장이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운영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1, 2 각 영업장을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고급오락장'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피고의 2017년 유흥주점 실태조사표에는 2017. 5. 31.자 '쟁점1, 2 각 영업장에 관한 건축물도면과는 달리 그 입구와 공간이 각각 구획된 벽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무벽으로, 출입구가 하나이고, 사용하는 공간도 구획되어 있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실태조사표상으로도 외부로 통하는 입구로 진입한 후 공용 카운터 좌우로 각각의 영업장으로 통하는 별도의 입구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영업장이 구조상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외관상 유사한 인테리어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위 영업장이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16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현재 쟁점1영업장에는 쟁점1영업장을 방문한 손님들의 술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별도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는 계산대(갑 제13호증의1, 2)가 있고, 쟁점1영업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나누어주거나,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O'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라이터 등이 비치되어 있다. 2017. 5. 31.과 2017. 6. 23. 현장조사 당시에는 현황이 달랐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③ 피고는 2017년 과세기준일 당시에는 2013년이나 2018년 과세기준일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2013년이나 2018년경 별개의 유흥주점으로 본 것을 2017년에는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야 할 만큼 건축물의 구조변경 등의 유의미한 사정변경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취소의 범위

일반세율 적용시 세액은 별지3 표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쟁점1영업장 건물에 관하여 각 납부하여야 할 2017년도 재산세(건축물) 및 지방교육세는 각 263,670원과 33,800원이고, 쟁점2영업장 건물에 관하여 각 납부하여야 할 2017년도 재산세(건축물) 및 지방교육세는 299,160원 및 38,35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각 취소하여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16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조혜수

판사 추진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16

별지1

[표] 건축물 현황

호실	층별	전유		층별	공유	
		용도	면적(㎡)		용도	면적(㎡)
E호	6층	위락시설 (유흥주점)	129.97	지하층	주차장	59.01
				지하층	기계실	6.42
	6층	전유공용(복도)	13.94	각층	화장실, 홀, 계단, 복도	26.8575
		합계	143.91			92.2875
F호	6층	위락시설 (유흥주점)	129.97	지하층	주차장	92.55
				지하층	기계실	6.76
	6층	전유공용(복도)	21.6	각층	화장실, 홀, 계단, 복도	28.2925
		합계	151.57			127.6025
H호[1]	6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 음식점)	92.04	지하층	주차장	69.06
				지하층	기계실	4.35
	6층	전유공용(복도)	5.42	각층	화장실, 홀, 계단, 복도	18.18.
		합계	97.46			91.59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1호증의1, 2)에는 E호와 H호로만 구분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상(갑 제2호증의1, 2, 3)에는 E호, F호, H호로 3등분되어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16

별지2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⑦ 제2항과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6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16

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 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법 제37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16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1조 제6호 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제21조 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16

별지3

1. 일반세율 적용시 세액 산출

(단위 : 원)

납세자	호수	구 분	현 부과세액	일반세율 적용금액	종과로인한 상승세액
원고1	□호	재산세(건축물)	2,798,970	263,670	2,535,300
		지역자원시설세	242,190	242,190	0
		지방교육세	540,860	33,800	507,060
		소 계	3,582,030	539,660	3,042,370
	□호	재산세(건축물)	3,175,730	299,160	2,876,570
		지역자원시설세	274,790	274,790	0
		지방교육세	613,660	38,350	575,310
		소 계	4,064,201	612,300	3,451,901
총 계				1,151,96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9-16

(단위 : 원)

납세자	호수	구 분	현 부과세액	일반세율 적용금액	중과로인한 상승세액
원고2	□호	재산세(건축물)	2,798,970	263,670	2,535,300
		지역자원시설세	242,190	242,190	0
		지방교육세	540,860	33,800	507,060
		합 계	3,582,030	539,660	3,042,370
	□호	재산세(건축물)	3,175,730	299,160	2,876,570
		지역자원시설세	274,790	274,790	0
		지방교육세	613,660	38,350	575,310
		합 계	4,064,201	612,300	3,451,901
총 계				1,151,960	